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2009년 9월 pp.9~39
한국세무학회

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심충진** · 구자은***

<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제도를 이해하고 외국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개선안에는 민법상 유류분제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동업기업과세 특례, 증여세 특례 규정 등 세제 안에서의 조화를 생각하였고, 우리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가업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가업 전부의 범위에 민법상 가업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유류분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업승계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특례규정을 받은 후 가업을 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 중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제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며 전분경영인, 종업원 등 제3자도 가업승계권자가 될 수 있도록 상속인 외에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도 현행 가업상속재산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업계는 회계의 투명성,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조세의 투명성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공동상속으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졸업할 경우에도 지주회사로의 전환할 경우 지속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가업승계 후 일정수준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피상속인의 사업연속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가업·사업승계제도의 성공적인 모델이 한국에서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사업승계, 가업승계, 유류분, 동업기업, 지배구조, 지주회사

* 본 논문은 제8회 한·중 세무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chjshim@konkuk.ac.kr, 02-2049-6049, 주저자

*** 한국조세연구원, 공인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jeunkoo@kipf.re.kr, 02-2186-2326,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08년 11월

게재확정일 2009년 1월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생산과 고용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그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있는 우리 경제 내에서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며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3백만개¹⁾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의 상황을 보면 사업장 수와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폐업율이 개업율을 상회하는 등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의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전부터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커서 상속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거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매각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2007년도부터 중소기업의 경영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지속경영을 위해서 상속세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이러한 요구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되었고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우선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의 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말 세법개정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공제금액을 높이고 연부연납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세제개정을 추진하였고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도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완화하고 상속공제액을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 업계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조세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업승계와 관련된 현행 세법의 규정만으로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사업지속 가능성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업상속 조세지원제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를 파악하고 둘째, 외국의 가업승계 및 사업승계 제도를 이해하고 셋째,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가업승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과세를 완화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가진 사람과 상

1) 통계청, 「2005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6.12.)」에 의하면 소기업과 중기업을 합하여 3,001,893개로 집계하고 있고 전체 기업의 99.9%에 달하는 숫자이다.

속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수직적공평성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이를 제외하는 것은 이 논쟁이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세제의 목적을 벗어나 상속세의 존폐와 관련된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상속세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세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기업을 상속하지 않고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인간에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간에 형평성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상속이외에 기업을 상속하는 것에 대하여 보다 우대하는 것은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고용유지 및 사회적 재생산의 효과 등이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아 소비하는 경우에 비교해서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장 제3절에서 최근 기업상속공제의 확대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간단히 분석한 바와 같이 보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국가의 조세지출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에 비교하여 기업승계에 따른 고용유지 및 사회적 재생산효과 등이 크다는 계량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언하며 본 연구에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3. 연구의 구성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기업승계 내지 사업승계의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논의를 서술하고, III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및 주요국에 대해서 사업승계제도의 형태 및 승계요건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IV장에서는 한국의 기업승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

기업승계에 대한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내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에 대한 성과를 비교한 선행연구와 기업승계의 중요성 및 지원방안을 논의한 선행연구로 구분된다.

1.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성과비교

남영호·문성주(2007)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을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으로 분류한 후, 두 기업 간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들 간에 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보다 수익성, 생산성, 고용력 등이 높음을 밝혔다.

그러나, 위의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성과를 비교한 거의 최초의 논문이고 외국의 경우에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항상 위의 논문과 같이 가족기업이 우수하다는 결과는 아니므로²⁾ 해당 논문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족기업의 성과가 비가족기업의 성과에 비하여 유리하므로 성과면에서 유리한 가족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기업승계지원제도가 기업승계제도 보다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2. 기업승계의 중요성 및 지원방안

기업승계의 중요성 및 세제지원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로는 신상철(2007)의 보고서와 조병선(2007)의 보고서 및 최승필(2008)의 보고서가 있다.

가. 신상철(2007)

신상철(2007)은 설문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의 기업승계관련 과세제도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승계 실태조사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경영자는 87%이상 기업승계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승계과정을 진행 중인 경우는 20%에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향후 승계와 관련하여 기업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78%이상이 기업승계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승계관련 과중한 조세부담을 들고 있고, 60%이상이 상속세 등의 비용이 승계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승계에서 조세부담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48%이상이 현금 등의 납부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응답하고 있어서 사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자산을 형성하고 있어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낮고 세금납부를 위하여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

마지막 결론으로 기업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한 상속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상속요건의 완화와 기업승계공제 확대, 중소기업 상속재산 할인평가제도의 도입, 기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제도 도입,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연장에 따른 이자율의 인하, 세율조정을 제시하였다.

2) 일본 國枝繁樹(2001)에 따르면 부모는 자식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효율적인 경영자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탈리아 Zingales(1994)에 따르면 오히려 그 가족이 기업경영에 부수한 다양한 특권(사적이익)을 받고 이를 승계하고자 하므로 기업의 효율적 경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국 Gale and Slemrod(2001)에 따르면 상속세의 존재가 중소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견해가 있음.

나. 조병선(2007)

조병선(2007)은 먼저 가업승계의 개념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왜 가업승계가 중요한 현안이 되는지를 직관적인 관점과 실태조사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 후 가업승계에 관한 주요국의 지원제도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가업승계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기업소유자의 개인적 역량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유주인 경영자가 바뀌는 시기가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시기임을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가족기업의 비중(66.5%)을 제시하고 기업은행 거래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업승계 이전의 기업과 가업승계 이후의 기업을 비교하여 가업승계를 한 기업이 경영성고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업승계가 현안과제로 부상하는 이유로 기업은행 여신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표자 연령 60세 이상 거래기업의 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2002년 2월 6,465개에서 2007년 2월 11,709개)하여 창업세대 CEO가 고령화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여 303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한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방식으로 상속(20.2%)보다는 생전증여(44.5%)를 선호하고 5년 이내에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이 조사대상 기업의 50%에 달하였다. 가업승계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정한 것은 신상철(2007)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세부담(73.5%)이었다. 마지막 결론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지원방안 중 상속·증여 과세제도 개선방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화,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연장에 따른 이자율 인하,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조세감면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다. 최승필(2008)

최승필(2008)은 먼저 상속세의 존재론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세제와 외국의 세제를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상속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제도와 비교 후 제시한 방안은 기업지속성 감면기준의 완화, 세액공제의 확대, 누진세율조정, 가업승계시 경영권 프리미엄의 할증을 완화 또는 폐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지원제도를 제시하였다.

기업지속성 감면기준의 완화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면 상속인의 운영기간·대표이사재직기간·주식보유비중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과 같이 상속세의 납부유예 후 일정기간 보유시 상속세 전액감면과 같은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위에서 소개한 가업승계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가업승계와 관련된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성과비교에 대해서는 가족기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축적된 연구의 양이 많지 않고 대상을 상장기업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방향

에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최승필 2008)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초점을 달리하고자 한다. 먼저 사업승계의 관점에서 민법의 유류분제도와와의 조화 및 동업기업의 과세특례, 사전증여 과세특례와의 조화를 생각해 볼 것이다. 또한 외국제도와 비교하여 우리제도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우리 제도 자체 내에서 논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지속가능성을 확대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히 친족에게 사업을 이전하는 가업승계가 제3자에게 사업을 이전하는 사업승계와 비교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당위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사업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한 목적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III. 가업승계제도

1. 우리나라 가업승계제도의 변천과정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가업승계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세제 변천을 개관하고 최근 가업승계제도의 개정에 따른 세부담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구체적인 변천과정 및 최근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는 1987년 11월 28일 개정세법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로 처음 도입되었다. 처음 도입시에는 개인사업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사업용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이 때 가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장기계속사업자를 의미한다.

둘째, 축산업·수산업·광업·제조업·도매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동일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위하는 자만이 해당된다.

셋째, 1987년 11월 28일에 신설된 가업상속 상속세 특례는 1990년 12월 31일에 처음으로 개정이 되었다. 개정은 공제액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20(1억원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이라고 규정하여 한도가 설정되었고 시행령에서 소득세법을 참조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시행령에 해당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1993년 12월 31일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로 이관되

었으나 내용상은 차이 없이 1996년까지 계속되었다.

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1996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로 이관되어 기초 공제로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의 범위에 개인 사업용 자산 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이 포함되었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가업승계특례를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업 및 임업
- ② 어업
- ③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 ④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1996년 이 후 법의 개정을 살펴보면 1998년 12월 28일의 개정에서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을 무조건 공제하던 방식에서 변경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이라고 규정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미달되는 경우에 무조건 1억원이 공제되던 불합리함을 개선하였다. 1996년 이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특별한 변경이 없었다. 대폭적인 변경은 2007년말에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로, 가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의 상속은 가업상속재산의 20%(한도 30억원)와 2억원(2억원 미달시 가업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으로 개정된 것이다.

둘째, 연부연납제도의 실효성 확보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은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까지이다.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개정하였다.

셋째,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특례 도입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사전증여(30억원 한도)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 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시 정산하도록 신설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넷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강화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10년동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우리나라 주요 가업승계 관련 제도³⁾

가. 가업상속 재산의 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이 있다.

나. 가업승계 상속공제 금액 및 요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Max ①,②]으로 한다.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60억한도. 단,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데,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80억한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한도)
- ②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업상속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상속인은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둘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제조업 등)일 것. 셋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일 것. 넷째, 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4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었던 규정이 2008.12.26에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기준이 되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10년, 15년, 20년으로 단축·세분화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8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제도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받으면 최고 30%(대기업 20~30%, 중소기업 10~15%)까지 유가증권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2008년 말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였음.

라. 기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연부연납⁴⁾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최장 5년이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세무서장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기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기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마. 추정 요건

기업상속으로 공제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되 기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기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는 100분의 90)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액이 추정된다.

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받고 기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사. 기업승계 관련 규정 간의 관계

기업승계와 관련한 규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승계와 관련된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승계상속공제와 조세특례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다른 제도가 부모가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를 하여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인 반면 해당 제도는 사업자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아 중소기업 등을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창업을 돕는 취지이므로 그 목적을 달리하는 세제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였다. 다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기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의 대

4) 연부연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①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 ② 연부연납에 대한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것

상을 달리하여 전자가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것이고 후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부모가 사전(死前)에 자녀에게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나 지분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특례조치이다. 납세자는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

조세특례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전증여시 저율로 과세한 후 상속세 과세시에 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증여에 따른 과세를 경감한다는 점에서는 특례에 해당하지만, 결국 상속되는 시점에서는 가업승계상속공제 등을 통하여 정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제도는 납세자가 선택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그 대상을 증여와 상속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최종적인 세부담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를 통하여 정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업승계상속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표 1〉 가업승계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의 비교

구 분	가업승계 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 상	상 속	증 여
공제대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주식 및 출자가액
피상속인(증여자)의 사업영위기간	최소 10년(15년, 20년)	10년
공제금액	[Max 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40% (10년 이상인 경우 60억한도, 15년 이상인 경우 80억한도, 20년 이상인 경우 100억한도) ② 2억원. 다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10%로 저율과세
기 타	-	상속시 정산

3.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에 따른 세부담 효과분석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기초금액 1억원에서 2007년도 말에 상속재산의 20%(한도 30억원), 2008년도 개정(안)에서는 상속재산의 40%(한도 100억원)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계산한다⁵⁾.

- 5) 개정 전·후의 세 부담 효과만을 간략히 분석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및 영업권이 음수(-)이면 영(0)으로 처리하였다.

$$\text{순손익가치} = [(NI_{t-2} \times 1 + NI_{t-1} \times 2 + NI_t \times 3) / 6] / 0.1$$

$$\text{순자산가치} = BV_t + GW_t$$

$$\text{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 \text{순손익가치} \times w + \text{순자산가치} \times (1 - w)$$

여기에서, NI_t : t 시점의 당기순이익

BV_t : t 시점의 자산가치

GW_t : t 시점의 영업권

w : 가중치(부동산 과다법인 0.4, 그 외 법인은 0.6)

개정 전 상속세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기업상속 공제액 1억원 기준을 적용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다. 2007년 말 개정 세법 및 2008년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하고 기업상속공제액은 해당 연도의 개정 및 개정(안)을 반영한 후의 금액에 2007년 말은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도 개정(안)은 상속세율의 개정(안)을 곱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다.

〈표 2〉 기업상속공제확대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효과분석

(단위 : 기업, 천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기업 수 (비율)	상속세 평균금액			2007년말 기준 증감율(%) (B-A)/A	2008년 개정안기준 증감율(%) (C-A)/A
		2007년말 개정 전 기준(A)	2007년말 개정 후 기준(B)	2008년 개정(안) 기준(C)		
① 2억원 이하	129 (1.45%)	0	0	0	-	-
② 2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6,783 (75.98%)	1,799,328	1,281,771	482,066	(-)28.76%	(-)73.21%
③ 15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	900 (10.08%)	8,552,059	7,102,059	3,070,520	(-)16.95%	(-)64.10%
④ 250억원 초과	1,115 (12.49%)	30,053,657	28,603,657	16,933,287	(-)4.82%	(-)43.66%
계	8,927 (100%)	-	-	-	-	-

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Kis-Value II 2007년도 외감대상법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며,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및 해당 연도의 기업상속공제액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효과분석을 보면, 2007년 말 개정기준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전체 비상장 중소기업 8,927개 기업 중 1.45%에 해당하는 129개 기업은 상속

세 부담이 없으며, 가업상속재산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상속재산 2억원 초과 150억원 기업)은 전체 75.98%이며 보충적 평가액은 16.95%로 감소되었다. 가업상속공제 30억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5개 기업이며 개정으로 구간별로 16.95%와 4.82%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하였다.

2008년도 개정(안)이 적용되며 개정 전에 비해서 공제비율이 20%에서 40%로 증가되고 한도액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되어 보충적으로 평가한 주식의 평가액은 대폭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2007년 말 개정 전에 비해서 상속재산의 구간별로 73.21%, 64.10%, 43.66%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4. 일 본

일본의 경우에 사업승계를 개인경영의 경우와 비상장주식으로 나누어 상속세 과세가액을 달리 계산하고 있다.

가. 사업용 택지 등의 특례

유산 중에 택지나 사업에 사용되었던 택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택지 등의 평가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특례가 있다. 이것을 소규모택지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특례⁶⁾라 하고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이나 유증을 통하여 택지 등을 취득한 개인이다. 사업용택지와 거주용택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하고 있다(租税特別措置法 第69條의 4).

- ① 특정 사업용택지에 해당하는 경우 : 400㎡까지 80%
- ② 특정 거주용택지에 해당하는 경우 : 240㎡까지 80%
- ③ 상기 이외의 특례의 대상이 되는 택지의 경우 : 200㎡까지 50%, 여기에 해당하는 종류로는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자전거주차장업 등이 있다.

6)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상속 개시 직전에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친족의 사업용이나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택지 등 일 것.
- ② 건물이나 구축물의 부지용으로 사용될 것
- ③ 재고자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④ 상속 개시 직전에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친족의 사업용이나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택지 등 일 것.
- ⑤ 건물이나 구축물의 부지용으로 사용될 것
- ⑥ 상속세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분할되어 있을 것

나. 비상장주식의 특례

상속 및 유증에 따라 비상장주식이나 출자를 취득하고 이 특례의 적용을 받을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그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10%의 비율로 감액한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가지고 있던 비상장주식이나 출자 중에서 상속개시일에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 총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부분(10억엔 한도)에 대해서는 10% 감액된다. 여기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사업을 일정기간 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50% 이상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5% 이상을 보유한 친족에게 상속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에 가진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나 출자의 시가총액(상속세평가액에 따른 총액)의 합계액이 20억엔 미만이어야 한다(租税特別措置法 第69條의 5).

다. 세제개정의 움직임⁷⁾

일본의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2008년 세제개정에 일정 사업자가 비상장주식 등의 사업용자산을 상속한 경우에 과세가액을 80%이상 경감하는 조치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2008년 2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세법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경감폭을 80%로 확대하고 당해 경감된 80%는 감액이 아닌 납세유예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동 주식을 사망시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최승필 2008). 특례대상도 발행주식총액이 20억엔 미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고 경감의 조건도 5년간 사업계속이나 고용의 80%이상 유지 등으로 완화하였다.

피상속인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을 친족의 지분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친족관계자(사업승계상속인을 제외) 중 최대주주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업승계상속인은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하여 친족과 합하여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친족관계자 중 최대주주가 되는 후계자를 말한다. 개인자산의 관리 등을 행하는 법인의 이용 등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5. 미 국

가. 상속재산 평가 특례제도

첫 번째로 통상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되지만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2007년에는 94만달러(2006년에는 90만달러)를 감액상한⁸⁾으로 하여 현재 이용가치에 근거한 평가를 할 수 있다(IRS § 2032A).

① 물적자산(토지·건물 등)이 가족에게 이전될 것, ② 상속 전 8년 중 5년 이상 상공업·농업에

7) 일본 재무성 cite(www.mof.go.jp)의 자료 참조

8) 1997년에 가족기업의 사업용 지분에 대해 130만달러까지 비과세(IRS Secs. 2057)하던 제도는 2004년도에 폐지되었다.

사용했을 것, ③ 대상 물적자산이 피상속인의 총자산의 25%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것 등이 있다⁹⁾.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 평가 특례제도는 개인경영 형태인지 법인경영 형태인지를 불문하지만, 법인경영 형태로 소유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회사 의결권의 20%이상의株式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주가 45인보다 적어야 하며 상속 순재산(총상속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5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의 25%이상이 적절한 자산(qualified real property)로 구성되어야 한다. 25%이상이 적절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가족포함)이 상속 전 8년간 중에서 5년 이상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피상속인이 주요하게 참여하는 사업에 해당 자산을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소규모 사업용자산의 연납제도가 있다.

세 번째는 가족이 구성원이 되어 조성한 파트너십의 지분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시에 통상보다 30%에서 40% 낮은 평가를 하는 것이 국제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가족파트너십의 자산평가경감(經濟産業省 事業承繼 第2創業研究會, 事業體の繼續發展のために中間報告2001).

나. 연방유산세

주(州)단계의 상속관련세금(State death tax)의 정액공제제도는 2005년도에 폐지하고 주(州)에서 납세하는 상속관련세는 전액 연방유산세로부터 공제된다.

〈표 3〉 상속세 세액공제

연(역년)	상속세의 세액공제액	유산세와 증여세 합계최고세율	주(州)의 상속관련 세에 대한 공제
2002년	100만달러	50%	현행(6만달러)의 75%
2003년		49%	현행(6만달러)의 50%
2004년	150만달러	48%	현행(6만달러)의 25%
2005년		47%	
2006년	200만달러	46%	정액공제 제도자체를 폐지하고 주(州)에서 납부한 상속세 전액을 공제함.
2007년		45%	
2008년			
2009년	350만달러		
2010년	상속세폐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동일(증여세만)	

9)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미국의 거주자이거나 시민이어야 함.
- ② 해당 상속재산은 미국내에 존재하여야 함.
- ③ 개인경영형태인지 법인형태인지를 불문하고 미국 내에 사업용(Trade or Business)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산일 것.

6. 영 국¹⁰⁾

가. 사업용자산의 공제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의 사업용자산이나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대상 자산에 따라서 100% 공제 또는 50%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IHT)과세체계에서 100%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의 종류에는 (i)단독 경영자에 의한 사업(해당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개별자산은 안됨) 및 이와 관련된 사업지분 또는 파트너십지분, (ii)비상장주식(단, 유가 증권인 경우를 제외) 및 (iii)양도인이 지배권을 소유하는 회사의 비상장유가 증권이 있다.

상속세 과세체계에서 50%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종류는 (i)양도인이 지배권(의결권 50%이상)을 소유하는 회사의 의결권부 상장 주식 또는 유가 증권, (ii)양도인이 지배권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양도인이 파트너인 파트너십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도인의 소유에 관련되는 토지, 건물이나 공장, 기계장치 및 (iii)양도인이 사업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나 공장과 해당 토지, 건물, 기계장치나 공장이 신탁재산(settled property)으로 양도자가 지분에 대한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양도자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위의 어떤 자산이라도 해당 양도 전 2년간 혹은 해당 자산에 의해 대체된 자산과 합하여 해당 양도전 5년간 중에서 2년간은 해당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¹¹⁾

나. 비상장주식 평가

주식의 상속이 사업용 자산공제 또는 농업용 자산공제에 의해 100%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관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해당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i)자산가치의 이전에 의해 양도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ii)관련 자산의 조세회피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7. 독 일¹²⁾

가. 사업용 재산 및 주식에 대한 상속공제

독일에서는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의 사업용재산이나 주식¹³⁾의 상속에 대해서 225천유로를

10) 영국국세청 cite(www.hmrc.gov.uk)의 관련 자료 참조

11) 영국의 사업승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영국 국세청은 이 제도에 서 개인자산을 가장해 놓은 것은 아닌가, 임대업의 임대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12) 독일세제는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諸外國中小企業事業關聯法制度等調査,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2007.3. 을 재인용

13)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공제하고 더불어 잔액으로부터 35% 공제하는 사업용자산의 경감조치가 있다.¹⁴⁾ 1997년 개정 이전에는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경감조치가 있었지만, 1997년 개정에서 사업존속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가족 외의 자에 의한 사업승계에 대해서도 경감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는 5년간 사업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상속 전 기간 요건은 없다.

나. 사업용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제13a조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의 목적은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측근 친족이 아닌 수증자¹⁵⁾에게 세구분 1의 대상자(배우자, 자녀, 사망한 자녀의 자녀 등)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수증시에 세구분 1의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이용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과 수증시에 세구분 2 및 3에 속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이용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88%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납세기한 연기

지난 2005년에 독일 정부는 가족사업의 상속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공포하고, 가족사업이 처한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하였다. 이 개정에 따르면 수증자가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자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의 지불을 10년 후까지 연기하거나 이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업의 계속에 따라 세금은 10년 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다. 해당조치는 사업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2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한 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지분(주식)에도 적용된다.

라. 최근의 흐름

독일과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우대 조치가 현금 등 기타 자산의 상속과의 차이를 낳기 때문에 법 아래의 평등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2006년에 이 점과 같은 판단의 취지를 발표했다. 따라서, EU의 경우에는 가까운 장래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14) 본 제도는 1994년에 도입되어 최초에는 공제비율이 25%였다가 1997년부터 현행의 공제비율인 40%가 되었다가 최근 35%로 감소되었다.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는 중소기업의 존속 발전을 증시하는 사회의식이 본 경감조치 도입의 기반이 되었다.

15) 세율구조의 구분에서 세구분 2은 부모 및 직계존속(세 구분 1에 속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계친, 인척 관계상의 자녀 및 부모, 이혼 배우자를 말한다. 세구분 3에 속하는 것은 세구분 1 및 세구분 2 이외의 계승인이다.

8. 주요국의 제도 비교

사업승계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제도를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주요국은 과거 몇 년 동안 사업승계와 관련하여 사업승계를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왔다. 특징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40%까지 확대되었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율을 35%로 낮추었고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액을 축소하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 같은 EU국가인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볼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각 주요국이 어떤 경우를 사업승계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사업승계 요건을 일반화하여 몇 가지의 종류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에 대한 제한이다. 이는 주로 임대업이나 대부업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종의 경우에는 자산 그 자체(건물, 현금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승계를 활성화하여 고용창출을 하는 2차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업종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국 및 독일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수동적인 투자활동이나 수동적인 자산의 임대인 경우에는 특례를 배제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택지에 대한 특례에서 감액율을 달리 규정하여 차등을 두었다.

둘째, 사업승계는 말 그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한다는 의미로 사업승계관련 세제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인 만큼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 때 사업승계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은 사업용자산(주식포함)의 보유요건(상속 전·후기준), 사업의 실질적 종사요건(기간기준, 임원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국은 모두 사업승계요건으로 장기간의 보유요건 및 종사요건을 두고 있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사업을 계속하거나 임원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승계 전·후로 5년(10년내에 연속 8년 중에서 5년)씩 10년의 사업종사요건을 두었고, 영국의 경우에는 승계 전 2년의 보유요건, 독일의 경우에는 승계 후 5년 간의 보유 및 종사요건을 두고 있다. 주요국은 대부분 승계 후 5년 정도의 기간제한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승계 전 5년의 기간제한을 추가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당 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국은 승계 전 2년의 기간 제한만을 두어 요건을 완화한 형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법률은 요건의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5년간의 사업계속 및 80%이상의 고용승계요건을 두어 다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사업승계를 위한 요건 외에 각 국의 사업승계지원제도가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승계를 받는 자의 지위를 상속인에 한정할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경우에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사업승계지원의 형태로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가업승계의 형태로 해당 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국의 가업승계관련 조치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주요국의 기업승계 제도의 비교

국 가	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 감액비율	사업승계요건	업종제한	사업승계 세제인가
미 국	- 상속세의 기초공제 인상에 따라 2004년 이 후에는 실질적 감세효과 없음(2007년의 기초공제는 200만달러에 달함).	- 상속 전 10년안에 연속 8년 중 5년이상 사업종사 - 상속 후 10년간 중 연속 8년 중 5년이상의 사업종사	- 업 종 제 한 없 고 소규모개인사업자 추가지원에는 업종제한 없음	기업승계
일 본	- 특정사업용택지 : 80% - 기타 사업용택지 : 50% - 비상장주식 : 10%(80%로 인상하고 납세유예법안제출)	- 특정사업용택지 : 상속세신고 기한까지 사업계속 - 기타사업용택지 : 제한없음 - 비상장주식 : 상속세신고기한 까지 계속보유하거나 임원취임	- 택지관련해서는 업종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함	기업승계
영 국	- 비상장주식이나 개인사업주의 사업용토지 : 100% - 회사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 : 50%	- 양도 전 2년간 양도자산 소유 요건 - 승계 후 계속보유·사업계속의 요건 없음	- 업종제한 없음	사업승계
독 일	- 일률 35%(22.5만유로 공제 후)	- 사업 후 5년간의 계속보유 및 사업유지	- 업종제한 없음	사업승계

IV. 현행 기업승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민법의 유류분 제도와의 부조화

가. 문제점

현행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1인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다. 기업의 전부를 비록 상속인 1인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업을 승계받지 못한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기업의 전부가 상속인 1인에게 상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1인에게 전부를 상속할 경우 상속받지 못한 배우자나 자녀의 생활보장, 상속인 간의 공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기업승계의 원활화를 위해서 민법상의 유류분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류분의 비율(민법 제1112~1118조)은 다음과 같다¹⁶⁾.

16) 다른 나라의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일본(민법 제1028조~1044조) : 법정상속분의 1/2(직계존속만이 유류분권리자인 경우는 1/3), 독일(본기본

〈표 5〉 우리나라 유류분의 비율

구 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분의 1/3	법정상속분의 1/3

나. 개선방안

가업승계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세법조문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민법상의 유류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 1인이 승계받는 가업 전부의 범위를 판단할 때, 승계받지 않는 상속인의 민법상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쉽게 상속인 1인에게 가업을 승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1인의 지분율이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최소한의 지분을 규정을 보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父)이 가업상속기업의 지분율을 60%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4인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상속인들의 유류분(母, 자녀2)을 제외한 경우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자녀1) 1인의 지분율은 38.6%가 된다¹⁷⁾. 만약 상속인이 많을 경우 가업승계자의 지분율은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을 제외한 가업상속인의 지분율이 비상장법인일 경우 최소한 30%(상장법인 20%)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업승계를 받지 않은 상속인의 민법상 유류분을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유상취득할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문제

가. 문제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다(상증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를 위하여 생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세에 합산되고 유류분 정산 기초재산에도 산입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법상 유류분과의 부조화가 발생되고 추가적으로 상속인 중 1인이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자의 노력에 의하여 창출된 자기주식 가치의 상승분이 증여자 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어 오히려, 사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불리한 현상이 발생된다.

법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독일민법전 참조) : 법정상속분의 1/2,

17) 모친의 법정상속지분율 : $60\% \times 1.5 / (1.5 + 1 + 1) = 25.7\%$, 자녀2의 법정상속지분율 : $60\% \times 1 / (1.5 + 1 + 1) = 17.1\%$, 모친의 유류분 : $25.7\% \times 1/2 = 12.85\%$, 자녀2의 유류분 : $17.1\% \times 1/2 = 8.55\%$,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1의 상속지분율 : $60\% - 12.85\% - 8.55\% = 38.6\%$

가업승계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시점에 가업상속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승계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받지 않은 상속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업상속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 피상속인은 증여시점에 이미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 있어야 하고, 가업승계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특례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후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5년간 가업을 영위한 자가 사전증여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인이 16년부터 20년 사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고 그 후 5년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임기간이 15년으로 가업의 영위기간인 20년 중 80%이상의 기간인 16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규정을 만족할 수 없어서 가업상속공제를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듯이 가업의 영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가업승계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를 전제로 주식을 사전에 증여받은 후 가업을 승계할 경우와 사전에 주식을 증여받지 않고 상속개시 시점에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나. 개선방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승계를 위하여 생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세에 합산되고 유류분 정산 기초재산에도 산입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법상 유류분과의 부조화가 발생되고 추가적으로 상속인 중 1인이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자의 노력에 의하여 창출된 자기주식 가치의 상승분이 증여자 이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어 오히려,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불리한 현상이 발생된다. 따라서 증여받은 시점과 상속받은 시점에 자기주식 가치 상승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후 가업을 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 중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제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 받은 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의 영위기간으로 간주하여 80%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 동업기업(파트너십)의 가업상속 규정 미비

가. 문제점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7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에 도입되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과세특례를 두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금액의 계산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따르고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과 가업승계규정과 관련성을 보기 위해 가업승계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보면, 가업승계적용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과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동업기업의 경우에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고 배분된 소득의 납부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따르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가업상속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업요건 등을 필요로 하는데, 동업기업으로 신청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에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동업자가 3명 이상만 되어도 최대지분율이 5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비상장법인) 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나. 개선방안

가업승계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과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일정기간 다른 법의 적용을 받던 실체가 동업기업이 되는 경우, 그리고 동업기업으로 적용받고 있던 기업이 동업기업 외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기업의 실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기업의 형태만 다르게 전환되기 때문에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에서 특히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동업기업의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50%(40%)이상의 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동업기업에 3인 이상 참여할 경우 현실적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이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의 정의를 할 때 지분율의 예외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 동업자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의 조세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4. 가업승계권자의 제한과 지속 경영

가. 문제점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해서만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이는 가족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승계인이 상속인이 되지 않으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인에 한정하여 사업을 가족에게 대물림할 경우에만 지속 경영이 가능하고 전문경영인 등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경우 지속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을 한정함으로써 전문경영인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종업원의 경영 참여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여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의 무상 대물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

서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가업승계와 지속 경영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많은 전문경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

나. 개선방안

상속인으로 한정된 가업승계자의 범위를 전문경영인, 종업원 등 제3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업승계에서 사업승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유증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친족 이외의 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가업승계와 관련된 특례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이 가업승계를 통한 지속경영에 비하여 국민 정서에 더 부합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업승계와 가업승계는 동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업승계가 가업승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업승계는 근본적으로 경영 참여가 불가능했던 전문경영자, 종업원 등이 경영참여가 가능해 짐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분리, 종업원 등의 참여의식 고취, 전문경영자의 활동 등 여러가지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가업상속재산공제 확대의 실효성

가. 문제점

2007년 말 가업상속재산공제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2억원에서 150억원의 범위에 있는 기업은 28.76%의 상속세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었다. 또한 2008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2007년도 개정 전에 비해서 공제비율이 20%에서 40%로 증가되고 한도액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되어 상속재산의 구간별로 73.21%, 64.10%, 43.66%의 대폭적인 세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가업상속재산공제는 확대 개편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므로 상속세 부담액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액적인 한도액 증가와 더불어 상속재산가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지속경영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개선방안

업계에서는 가업상속의 원활화를 위해서 주로 상속세의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서 상속세의 존재논란을 포함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다. 조세지원의 방향도 중소기업의 사업승계금액을 파악하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여 금액적 한도를 높이는 방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일정한도 하에 사업지속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세금을 확실히 낮춰주는 입장에서

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지속경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승계에 따른 조세지원만이 최선은 아니다. 우선, 기업승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므로 기업승계 후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되어 오히려 경제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의 투명성,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조세의 투명성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6. 기업 승계권자의 범위 제한

가. 문제점

현행 제도에 의하면 기업승계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공동으로 기업을 승계받아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나. 개선방안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도 상속인 1인이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기업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전부를 상속인 1인 및 가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다.

7. 기업상속재산의 범위

가. 문제점

기업상속재산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 때, 개인은 토지 및 건축물을 사업장과 주거용으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과 주거용의 구분기준 등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기업은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경영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

다. 만약, 공제대상 업종과 비공제대상 업종을 겸업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를 안분할 것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비록 단일의 공제대상 업종을 경영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가업과 관련된 자산과 가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어떻게 구분하여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유가증권(주식)을 가업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등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납세자와의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나. 개선방안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거주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토지 및 건축물의 겸용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건물의 면적 중에서 사업용의 면적이 거주용의 면적보다 크고 사업장내에서 거주할 경우 해당 거주용 건물은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속경영을 위해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가업상속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무제표에서 지속경영 및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어떻게 분류,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8. 지속적인 가업승계의 제한

가. 문제점

가업승계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게 될 경우 그 다음 세대로의 가업승계는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주식을 승계받은 승계인은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기 위해서 성장을 조절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제한적 가업승계지원제도는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여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 개선방안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히려 해당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더 이상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지속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질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가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진다면 지속적인 세제혜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9. 사후관리의 문제점

가. 문제점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 해당 사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및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속경영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인구를 유지하고 확대재생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용자산의 유지만으로 해당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나. 개선방안

현행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창출의 증대에 대한 사후관리가 빠져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의 경우는 고용창출의 유지를 중시하여 가업승계 후 일정수준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개정법률에서 납세유예를 위한 조건에 80%이상의 고용유지를 두고 있다. 사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고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0. 상속재산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 위배

가. 문제점

상속재산이 현금일 경우와 사업용재산 및 비상장중소기업의 여부 등에 의해서 상속세 부담이 달라진다면 과세대상에 따라서,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우대 조치가 현금 등 기타 자산의 상속과의 차이를 낳기 때문에 법 아래의 평등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있다.

나. 개선방안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보면 대부분 유형자산에 한정하고 있다. 사업용 은행계좌를 개설한 기업의 경우 사업용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도 당연히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다.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목적이 지속경영에 있다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은 모두 가업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우대 조치가 현금 등 기타 자산의 상속과의 차이를 조정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11. 사업연속기간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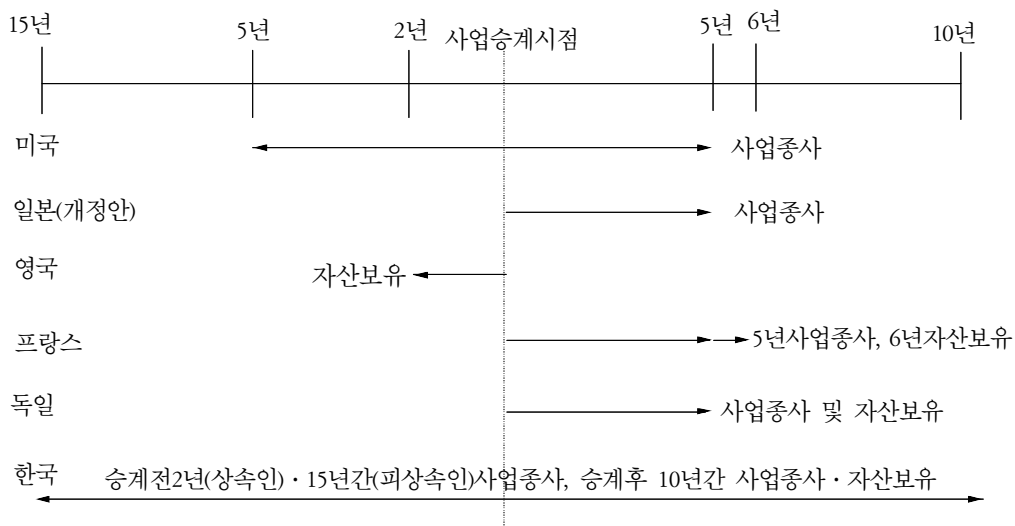
가. 문제점

현재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며 가업의 지속연도를 15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5년 이내 매각할 경우에 일정 범위(10%)를 넘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2008.10.1에 발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을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하였지만 재검토는 필요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후관리의 개선방안에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이고 이 단락의 사업연속기간의 단축은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판단될 수있지만, 이는 해당 제도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나 완화하는 것이냐의 측면 뿐 아니라 가업승계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제도를 설계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 즉,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가업승계제도가 단순히 사업을 계속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고용유지를 통한 고용계속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책목적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나. 개선방안

주요국의 조세제도 중 사업지속을 위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업계속기간을 비교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주요국의 사업승계요건



<그림 1>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업승계요건은 너무 장기간에 걸쳐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 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종사기간을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였지만 보다 사업승계에 대한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최근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유도하고 신 바람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7년말 세제개편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많은 세법 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법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가업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가업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가업 전부의 범위에 민법상 가업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유류분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가업승계를 통한 지속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배제 후에도 가업상속 승계인의 지분율은 30%(상장법인 20%) 이상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업승계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특례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후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므로, 동 증여세 특례규정을 받은 후 가업을 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 중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제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를 전제로 주식을 증여 받은 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의 영위기간으로 간주하여 80%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동업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을 허용한다면, 동업기업의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50%(40%) 지분율에 대한 가업의 범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경영인, 종업원 등 제3자도 가업승계권자가 될 수 있도록 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도 현행 가업상속재산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세제상의 개편 뿐 아니라 세제 이외의 제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즉,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업계는 회계의 투명성,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조세의 투명성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우리의 현실을 보면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인 및 가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다.

일곱 번째, 개인 사업자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법에서 사업용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가업상속을 통해서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에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지속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우와 같이 고용창출의 유지를 중시하여 가업승계 후 일정수준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 번째, 가업승계제도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는 사업의 유지를 통한 고용을 유지하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려는 목적이 포함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후 사후 관리로 고용에 대한 일정수준의 유지라는 조건을 두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사업용 은행계좌를 개설한 기업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 있는 현금도 당연히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목적이 지속경영에 있다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은 모두 가업상속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사업승계와 관련된 사업유지요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이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사업지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속연도 등을 파악하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지속기간을 좀 더 축소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의 문화를 보면, 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많으므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세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가업승계제도의 성공적인 모델이 한국에서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세청, 1996, 「국세청 삼십년사」, 국세청
- 국세청, 1995~2008,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 김유찬, 2003, “독일의 상속증여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포괄주의 개념의 도입 및 기업상속에 대한 공제의 확대 -”,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 남영호·문성주, 2007.2,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성과비교 : 거래소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 노형진·한상도·장덕성, 2007.3, “우리나라 승계기업의 애로사항과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컴퓨터 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1호,
- 신상철, 2007.7,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세제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청, 2007.7, “기업관련 상속세 제도”, 중소기업청
- 조병선, 2007.7, “중소기업 기업승계 중요성 및 지원방안”, 기은경제연구소,
- 최승필, 2008.6,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 國枝繁樹, 2002.10, “相續税・贈與税の理論”, ファナショナル・レビュー
- 事業承繼・第2創業研究會, 2001, 事業體の繼續・發展のために中間報告」, 經濟産業省
- 事業承繼關聯法制等研究會, 2005.4, 「事業承繼關聯法制等研究會中間報告」, 事業承繼關聯法制等研究會
- 事業承繼協議會事, 2007.6, 「業承繼稅制檢討委員會中間報告」, 業承繼稅制檢討委員會
-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2007.3, 諸外國中小企業事業關聯法制度等調査」,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 Susan Flax Posner, 2007, 「2007 Estate & Gift Tax Handbook」, CCH
- www.hmrc.gov.uk
- www.irs.gov
- www.mof.go.jp
- www.nta.go.jp
- www.samili.com

The Study in Law System of Taxation Supportive to The Inheritance of Medium and Small Family Enterprise

Chung – Jin Shim* · Koo Jaeun**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laws about taxation supportive to proper inheritance of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has tried to understand related laws of foreign countries with understanding Korean laws in their comparison for finding out problems with directions of improvement. Suggestions include its harmony with civil codes on the reserve, with codes of special cases in taxation on partnership companies in laws about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nd with exceptional regulations in gift laws. Major suggestive points for improvement are as below :

First, As the successor can take the merit of the deduction of property in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only when he/she inherits the whole of it, the scope of the family business demands its exception from the reserve assigned to other successor based on terms of civil codes. This also demands the correction of codes of limitation about the period of successor's holding position as representative director as over 80% of term of operating family business after the special regulations about taxation on presentation are applied to the successor who inherits the share on the premise of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Second, Also in the case of partnership businesses, clearly definitive laws about the merits in taxation on inheritance should be promptly established, while currently activated laws about the exception of inherited property in family business should be also applied to the case in which the successor of the reserve inherits the family business, as this case can guarantee the third party such as professional manager, employee, to have the chance of being the successor of it.

Third, To compensate the merits of taxation in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the improvements of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transparency of business finance and tax, clarification of decision making system,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m as supportive acts to taxation should also be activated in case joint venture is under the operation in the co -inheritance.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onkuk University

** C · P · A,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Fourth, In case of personal business, the scope of business property should be clarified, as it should have constant supports to the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even after it is developed into holding company while the establishment of laws for keeping the average level of employment is demanded even after the inheritance of family business.

Fifth, Review for renewal of the successor's constant period of business is needed.

I expect that the successful model of laws about the family business and its inheritance would be created by the study in future.

<Key words> business inheritanc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reserve, partnership, corporate governance, holding company